공익광고협의회 규정

제정 2012. 8.22 개정 2015.12.21 시행 2015.12.22 개정 2019.12.24 시행 2019.12.27 개정 2021.12.29 시행 2021.12.3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공익광고 캠페인의 효율적인 운용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한다)에 공익광고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익광고"란 공사와 협의회가 주관하여 제작하는 공익성 캠페인 광고를 말한다.
- 2. "협의회"란 범국민성, 비영리성, 비정치(정책)성, 인간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익광고 주제선정 및 제작, 집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, 학계, 광고계, 언론계 등 각 분야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공익광고 캠페인의 기본방향 및 주제선정에 관한 사항
- 2.공익광고의 각 주제별 제작방향에 관한 사항
- 3.기타 공익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(구성) ①협의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공사의 공익

사업 담당 임원(이하 "내부위원"이라 한다)과 한국방송공사, ㈜문화방송, ㈜SBS,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편성 담당자(이하 "당연직 위원"이라 한다)를 제외한 외부위원은 전문가단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1.12.29>

②제1항의 전문가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광고회사, 제작사, 언론사, 또는 이와 관련된 단체, 시민사회단체, 그밖에 공사 공익사업 관련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가 추천하는 후보자들로 구성한다. 단, 감독부처 공무원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전문가단에서 제외한다. <개정2015.12.22.>

- 1. 대학, 공공연구기관에서 전임교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
- 2. 언론·시민사회단체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
- 3. 광고 관련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국내외 광고제 수 상, 또는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. 방송사 편성 관련 간부
- 5. 기타 공익광고에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각 계의 전문가로서 공사 공익사업 관련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- ③제2항의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

별도로 정한다. 단,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공익사업 담당임원으로 하며, 추천위원회에는 2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한다. <신설 2015.12.22>

- ④협의회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,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 는 협의회 재직기간이 긴 위원,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간사는 공익광고 담당팀장(국장)으로 한다.
- 제5조(임기) ①협의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, 재위촉 할 수 있다. 단 외부위원은 3년 이상 연속하여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내부위원과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. <개정 2021.12.29>
 - ②임기 중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. <개정 2019.12.24.>
 - 1. 심의 및 평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2. 특정업체에 유·불리하게 점수를 채점한 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심의업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4.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- 5. 위촉 시 경력, 학력, 부패행위 전력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
- 6. 협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개인적인 비위행위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7. 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아니한 경우
- 제6조(의무)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 - ②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의 직무 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4.>
- 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이 경우 제척의 결정은 위원장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안건의 이해당사자 인 경우
 - 2.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한 당사자와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 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 - 4. 위원이 당해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

- 5.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재직한 경우
- 6. 위원이 당해 공사가 발주하는 공익광고 관련 용역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
-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 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- ④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 다.
- ⑤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사안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- ⑥사안의 심의·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 게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8조(회의) ①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 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-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협의회는 대면심의·의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,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및확산 방지 등 대면심의·의결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29>
- ⑤공사의 사장 또는 위원장은 전문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1.12.29>
- 제9조(소집 및 통지) ①공사는 회의의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의 관련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 게시, 문자메시지 전송, 이메일 통지 등)에 따라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9.12.24.>
 - ②공사는 회의종료 후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안건의 관련당사자에 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.
- 제10조(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) ①협의회는 사안의 경과, 표결내용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 - ②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되, 협의회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- 단, 비공개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<개정 2019.12.24.>
-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비공개 의결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, 관계 전문가, 기타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2조(대리참석) 협의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 단, 내부위원이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결정사항 시행) 본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11조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사무관장) 협의회의 사무는 공익광고 담당부서에서 관장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5.12.21.>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9.12.24.>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1.12.29>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서

직위 : 공익광고협의회 위원

성명:

[직무유리 사전진단]

연번	진단내용	체크사항	
1	협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 ()
2	협의회 심의.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 하고 있다.	예 ()	아니오
3	협의회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.허가.특허 면허 등의 당 사자이다.	예 ()	아니오 ()
4	협의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,용역,계약 또는 연구,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.	예 ()	아니오 ()
5	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.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.	예 ()	아니오 ()
6	협의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.	예 ()	아니오 ()
7	협의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·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·의무 관계 변동,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.	예 ()	아니오 ()

※ '예'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청렴서약서]

상기 본인은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2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·용역·공사·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6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 행위 금지
- 7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8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

서약자 : (서명)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하

위 임 장

본인은 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으로서 금번 <u>회의</u>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<u>회의</u> (20 . .)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.

20 . . .

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귀하